

제1장 정정보도 사례



제1장 정정보도 사례

▶ 사례1

유명 제과회사가 특정 업체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불법적인 주식상장을 추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6서울조정952·953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제과식품 주식회사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뉴스타운 (뉴스타운)
중 재 부	서울 제1중재부
접 수 일	2016. 6. 30.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정보도, 손해배상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제과식품이 ○○제과의 상호, 역사, 연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불법적인 주식상장 추진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2016. 2. 2.부터 같은 해 6. 28.까지 총 27회에 걸쳐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적법한 영업양도 계약에 의해 구 ○○제과의 상표권 일체를 양수받았고, 주식상장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면 정정보도 및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의 상표권 양수를 확인하고, 보도 형식 및 횟수, 표현 방법 등을 볼 때 악의성이 있다며, 정정보도 게재와 함께 손해배상 3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해당 기사에 부적법한 내용이 없어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하였다.

조정대상보도

- 뉴스타운 - 『○○제과 상장에 전국이 들썩 “뭔 일여?”』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일자 경제/IT면) 외 26건

■ 내 용

형태적으로 실물 ○○제과 주식은 있는데 회계(재무제표)상으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세상에 이런 일”에나 나올 해괴망칙한 일일까? “영터리로 회계 처리한 잘못? 아님 정부기관, 채권단, ○○제과 원소유주, ○○제과식품이 짜고 치는 국민 대사기극?” 여하튼 이상야릇한 사건이 터졌다. 국내 유일의 해괴한 사건에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내노라”하는 회계전문가가 분석해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한 사건이다.

바로 1945년 국민의 기업으로 설립돼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제과의 경우다. 사건은 지난 1월 22일 ○○제과식품(주)(대표 신△△)이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주권예비심사청구서’를 접수함으로써 시작됐다.

“○○제과식품은 2001년 7월 □□□ 컨소시엄이 출자한 ○○제과식품제조(주)가 1945년 설립된 ○○제과주식회사의 제과사업부분을 양수하여 설립됐고 이를 2001. 11월 상호 변경한 회사”라며 신규상장을 표방하고 나선 것. 그러자 ○○제과주식회사 실물 주식을 보유한 이들이 ‘○○제과주권회복위원회’란 단체를 결성해 “○○제과식품의 단독상장은 불가하다”며 한국거래소에 25일 진정서를 접수했다.

‘○○제과주권회복위원회’에 의하면 “전국에 산재한 우리 ○○제과 주주들은 정부, 채권단, 법원 등으로부터 사기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우리가 매수한 ○○제과 주식이 ○○제과 주식이 아니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게 웬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냐?”며 “우리 ○○제과주주들의 잘못이라면 1999년 출자 전환된 ○○제과주식을 매수한 죄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들에 의하면 아시안 월-스트리트는 2001. 7. 3 기사에서 “○○제과 채권단은 □□□ Capital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제과 지배지분을 4,800억원에 매각했다고 발표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매각당시 ○○제과 주식은 1999년 출자 전환된 주식이 전부였고 그중 지배지분이라면 1999년 출자 전환된 주식의 51%가 아니냐?”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가 보유한 주식이 바로 1999년 출자 전환된 주식으로 그 51%에 해당하는 주식이다”고 주장했다. 채권단 등은 “서류상 양도니 자산매각이니 하지만 회사의 상호와 연혁을 모두 넘겼다는 것은 지분매각이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들은 “우리가 보유한 실물주식을 회수해 감자나 소각한 바가 없으니 우리가 가진 이대로를 ○○제과식품 주식 신주로 교환해 상장하는 게 옳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2001. 7. 11설립했으나 1945년 설립된 ○○제과를 모두(○○제과의 제과부분 자산 부채 상표권 연혁 등)인수하였다는 ○○제과식품(주)은 1945년부터의 연혁을 사용하고 있음은 물론 2001년도에 □□□ Capital이 주도하는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양수도나 자산매각이 아닌

‘외자유치’로 표시하고 있어 의혹을 더하고 있다.

양수도나 자산매각으로 회사의 연혁 등을 매도한 사례(판례)가 있는지? 지분매각이든 외자유치든 “자산=자본+부채” 공식에 의해 자본 즉 주식이 존재해야한다는 ‘대차평형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될지? 회계전문가들이 바빠졌다. 만약 ‘○○제과주권회복위원회’의 주장이 옳다면 ○○제과식품(주)측이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재무제표는 허위(?)가 된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뉴스타운(www.newstown.co.kr)의 홈페이지 메인 초기화면의 중앙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한다.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기재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가. 제목 : ○○제과 신규 상장 관련 보도 정정보도문
 - 나. 본문 : 본 뉴스타운은 지난 2016년 2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 홈페이지 경제면에 ○○제과식품이 “○○제과” 상호를 무단 불법으로 사용해 부적절한 실적을 쌓았으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상장을 추진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27차례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제과식품이 2001년 7월 체결한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제과식품은 “○○제과” 상호를 포함한 영업 일체를 양수한 정당한 권리자이므로 이러한 상호 사용이 불법행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구 ○○제과 잔존법인은 2001년 지난 상장 폐지 후 청산까지 완전히 마무리된 상황으로 ○○제과의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들은 법적으로 ○○제과식품의 신규 상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임을 전하는 바입니다. 또한 언론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악의적 자극적인 표현으로 ○○제과식품 및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한 바 있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기재 보도문을 뉴스타운 홈페이지 경제/IT면 중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 기재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기재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홈페이지 각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각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며,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함으로써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30,000,000원을 지급하라.
3. 피신청인이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기일이 도래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더하여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보도 형식 및 횟수, 표현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7. 11.

[별지]

- 가. 제목 : “○○제과” 관련 정정보도문
- 나. 본문 : 본 뉴스타운은 지난 2016년 2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 홈페이지 경제면에 ○○제과 식품이 “○○제과” 상호를 무단 불법으로 사용해 부적절한 실적을 쌓았으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상장을 추진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27차례 보도하였습니다.
-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제과식품은 “○○제과”의 상표권자이자 영업양수인으로서 적법하게 상호를 사용하고 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상장되었음이 밝혀져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피신청인 이의신청

▶ 사례2

신청인이 작곡한 곡이 성의 없고 질 낮은 음원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6서울조정987·988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배○○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인터넷 경향신문)
중 재 부	서울 제3중재부
접 수 일	2016. 7. 6.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정정보도)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음원 어부징 문제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작곡한 음원을 한 사례로 게재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어부징과 무관하고 음원 수익도 많지 않다며 정정보도 및 1,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조정대상기사 중 “성의 없고 질이 낮다”는 표현은 기자의 주관적 평가이나, 신청인이 어부징 음원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아티스트로 비취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정보도를 권유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인터넷 경향신문 - 『이런 모습 ‘짜퉁 음원’ ... 돈도 귀도 버렸네』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6일자 연예면)

■ 내 용

회사원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경험을 했다. 아이에게 들려주기 위해 평소 이용하던 음원 사이트에서 ‘겨울왕국’을 입력한 뒤 목록 맨 위에 뜨는 곡을 별 생각 없이 클릭했다. 그런데 흘러나오는 곡은 엉뚱한 경음악이었다. 자세히 보니 앨범 재킷부터 영화 <겨울왕국>과는 상관없는 음원이었다. 아티스트는 ‘편치편치’. 수록곡 목록도 ‘겨울왕국 윈터’, ‘겨울왕국 피아노’, ‘겨울왕국 비트’ 등의 3곡이 나란히 이어져 있었으며 오히려 오리지널 영화 OST보다 더 윗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다. 세 곡 모두 전자악기 등에 샘플로 수록돼 있음직한 조악하고 단순한 음악이었다.

A가 경험한 것과 같은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음원 사이트 멜론에 ‘별 그대’(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줄임말)를 입력하고 정확도 순으로 배열하면 상단에 뜨는 곡목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는 관련 없는 곡이다. 제목만 ‘별 그대’로 되어 있을 뿐 재킷 디자인이나 아티스트는 완전히 다르다. 음악 역시 단순한 경음악 반주가 반복될 뿐이다.

또 다른 음원 사이트 벅스에 ‘Moonlight’(월광)를 입력해 최신순으로 정렬해 보면 어떨까. 위에서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B라는 아티스트의 ‘Moonlight’이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를 생각하고 클릭해보면 처음엔 월광 소나타 1악장의 4마디가 반복되는가 싶더니 이내 다른 연주곡과 뒤섞여 장난스럽게 연결된다. ‘월광’의 이름만을 빌린 엉터리곡이다.

최근 주요 음원 사이트에는 이 같은 음원들이 상당수 유통되고 있다. 인기곡이나 유명 콘텐츠의 제목을 붙인, 성의 없고 질 낮은 음원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올리는 ‘음원 어부징’인 셈이다. 이 때문에 음원 사이트 내에서 이용자들이 검색할 때 엉터리 음원들이 되레 상위권에 검색되는 경우가 잦다.

관련 업계에서는 2, 3년 전부터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음원 어부징을 통해 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다. 일단 소비자가 음원을 클릭하고 나면 해당 음원에 대한 사용료가 발생한다. 곡당 사용료는 많지 않지만 무차별적으로 살포해 양으로 승부하면서 한 달에 수 백만 원씩 수익을 얻는 음원 공급자들이 꽤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을 현혹해 실수로라도 클릭하게끔 만들기 위한 교묘한 방법도 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곡 외에 <수상한 그녀> <비긴어게인> <어벤져스> 등 유명 영화 제목으로 검색할 때 제목만 빌린 엉뚱한 노래들을 꽤 발견할 수 있다.

벅스뮤직 C 그룹장은 “말도 안되는 수준의 음원을 하루에도 수 백개씩 악의적으로 내놓는 업체들이 꽤 있지만 음원 사이트에서 일일이 인위적으로 판단하거나 걸러낼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쓰레기 같은 음원들이 쌓여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며 “검색을 통해 ‘언어걸리는’ 것을 노리는 업체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오리지널 곡이 검색 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현상도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관련업계에서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공유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형편없는 수준이라 할지라도 일종의 창작물인 데다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무단 전제하는 식은 아니기 때문에 뾰족한 제재 방안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음원 어부징이 많은 장르는 뉴에이지나 동요, 국악, 클래식 등이다. 이들 장르는 가요나 팝에 비해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검색어 상위권에 올려 유지시키는 것이 다른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어부징이 그만큼 잘 먹힌다는 이야기다.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D 사무국장은 “음원 사이트를 이용할 때 무턱대고 검색어 상위권에 있는 곡을 클릭할 것이 아니라 아티스트의 이름이나 정확한 곡명, 앨범의 재킷 디자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감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경향신문(<http://www.khan.co.kr/>)의 홈페이지 연예면 대중음악면의 기사 목록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가. 제목 : “이런 몹쓸 짝퉁 음원 ... 돈도 귀도 버렸네” 관련 정정보도문
- 나. 본문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6월 16일자 홈페이지 연예면 대중음악면에 “이런 몹쓸 짝퉁 음원 ... 돈도 귀도 버렸네”라는 제목으로 B의 Moonlight라는 곡을 장난스럽고, 엉터리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해당 곡은 2013년 5월 뮤직 비디오로 먼저 제작하여 발표된 곡으로 당시 제작 과정에 40회 이상의 회의와 영상 촬영 당시 20명이 넘는 스태프 동원된 큰 프로젝트였으며, 해당 음원은 강남의 스튜디오에서 그랜드 피아노로 녹음이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불어 이런 어부지깅 현상으로 수 백만 원씩 수익을 얻는 음원공급자 등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B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음원 수익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B는 전혀 그런 수익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어부지깅을 실제로 하는 음원 공급자와 B와는 전혀 무관하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이런 몹쓸 짝퉁 음원 … 돈도 귀도 버렸네”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 : 지난 2016년 6월 16일자 홈페이지 연예>대중음악면에 “이런 몹쓸 짝퉁 음원 … 돈도 귀도 버렸네”라는 제목으로 B의 ‘Moonlight’라는 곡이 인기곡이나 유명 콘텐츠의 제목을 붙여 클릭을 유도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음원 어부징’ 곡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B의 ‘Moonlight’는 음원 어부징과는 관련이 없는 곡이며, 아티스트 B와 음원 어부징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해당 보도는 한국음악 콘텐츠산업협회, 벅스뮤직 등의 제보를 받고 기사화 한 것으로 확인 결과, 신청인은 ‘음원 어부징’으로 수입을 얻은 바 없으며, 보도에서 신청인의 ‘Moonlight’ 곡이 질이 낮고 영터리라는 부분은 기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근거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인터넷 경향신문(<http://www.khan.co.kr/>) 홈페이지 연예>대중음악면 초기화면 상단 기사목록 앞부분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016년 8월 18일 09:00부터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제1항, 제2항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피신청인이 위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의 조정대상기사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6. 8. 12.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인터넷 경향신문 - 『“이런 몹쓸 짝퉁 음원 … 돈도 귀도 버렸네”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8일자 연예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사례3

뇌물수수 혐의자에 관해 보도하면서 동명이인인 신청인의 초상을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6서울조정1193·1194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박○○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조선방송 (TV조선)
중 재 부	서울 제5중재부
접 수 일	2016. 8. 19.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정정보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손해배상 - 신청인 이의신청)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넥슨 김정주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을 보도하면서 수수혐의자들의 사진을 자료화면으로 게재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뇌물수수자 중 1인과 동명이인일 뿐, 조정대상보도의 금품수수 사건과 무관하다며 정정보도 및 5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제작 과정의 실수를 인정하고 심리 전 신청인 사진이 사용된 부분을 편집하여 다시보기(VOD)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정정보도 게재를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 하여, 정정보도 청구는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배상금액에 대해 당사자 간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중재부가 손해배상금 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며 이의신청을 하였다.

조정대상 보도

- TV조선 - 강적들 프로그램 『넥슨 김정주의 꼬리자르기②』 제하의 보도 (2016년 8월 4일자)
- 내 용
 - ▷ 강변호사 : 김정주 회장이 진경준 검사장한테만 준 게 아니에요.

(신청인 사진 게재)



당시의 LG 부사장하고 넥슨의 감사한테도 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동시에 요구했겠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니까 분명히 이쪽에서 먼저 줬는데 이게 지금 죄수의 딜레마예요. 일단은 문제가 터지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어떠한 행위 아닌가?

- ▷ 이준석 : 이건 약간 의견이 ... 강변호사님이 약간 세 명의 주식공여자 가지고 묶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거기 김상현 대표 같은 분들은 업계 관계자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이고 우리가 쓰리엔이라고 합니다. 넥슨, nhn, 엔씨소프트라고 경영진간의 상대 주식에 가지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씨는 넥슨에 거의 인수될 뻔 했다가 풀려난 케이스고 nhn의 최대 주주 중에 2대 주주가 넥슨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들 간의 주식거래는 진경준 같은 완전 업계 밖에 있는 외부 인사와의 주식거래와는 약간 다른 ...
- ▷ 함익병 : 아니 그것은 다른 얘기에요. 뭐냐면 김상현 대표가 있지만 원래 LG 지주회사가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준 사람에 ... 그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거예요.

(신청인 사진 게재)



그니까 진경준 검사장 김상현 대표 박○○ 감사 이 세 분은 동시에 받은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미국 가 있는 지사장 ... 이거는 뭐냐 뇌물성 혹은 어떤 그 지주회사 구성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 정확하게 나눠 준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뇌물 공여가 먼저 된 거예요.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 정정보도문을 TV조선 <강적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 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목 : 지난 8/3자 방송(142회) 중 실수로 동명이인의 사진을 게재한 것과 관련한 정정보도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8월 3일자(142회) 방송 중 넥슨 김정주 대표가 진경준 검사장 및 전 □□□ 감사 박○○ 등에게 4억2천5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방송하면서, 자료화면으로 전 □□□ 감사 박○○의 사진을 3회 인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때 사용된 사진은 금품을 수수한 전 □□□ 감사 박○○의 사진이 아니라, 동명이인인 (주)△△△△의 박○○ 대표님의 사진으로서, 사실과 다른 방송으로 인하여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된 (주)△△△△의 박○○ 대표님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박○○ 대표님은 전 □□□ 감사 박○○과는 다른 인물이며, 넥슨

김정주 대표의 금품전달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 조정성립(정정청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손배청구)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2016년 10월 5일까지 TV조선 <강적들> 프로그램에서,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고, <강적들> 제142회(2016년 8월 3일) 방송 다시보기에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1항을 이행한 경우, 정정보도청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6. 9. 29.

[별지]

- 가. 제목 : <강적들> 제142회(2016년 8월 3일) 방송 관련 정정보도문
-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8월 3일자(제142회) 방송 중 넥슨 김정주 대표가 진경준 검사장 및 전 □□□ 감사 박○○ 등에게 4억2천5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내용에서, 자료화면으로 전 □□□ 감사 박○○의 사진을 3회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때 인용된 사진은 금품을 수수한 전 □□□ 감사 박○○의 사진이 아닌, 동명이인인 (주)△△△△의 박○○ 대표의 사진으로서, (주)△△△△의 박○○ 대표는 넥슨 김정주 대표의 금품전달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000원을 2016. 10. 31.까지 지급하고, 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1항을 이행하는 경우, 이 사건 조정대상 방송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3.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이유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9. 29.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TV조선 - 강적들 프로그램 제151회 『〈강적들〉 제142회(2016년 8월 3일) 방송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6년 10월 5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이의신청

▶ 사례4

여성호르몬제의 부작용에 대한 보도에 자료화면으로 사용된 제품은 여성호르몬제가 아닌 단순 건강기능식품으로 보도 내용과 무관하다.

사 건	2016서울조정3 정정청구
신 청 인	○○○○○○○○ 유한회사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MBC-TV)
중 재 부	서울 제7중재부
접 수 일	2016. 1. 5.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정정보도)

사건개요

- 피청인은 중년 여성들이 갱년기 증상에 복용하는 여성호르몬제가 오남용 시 자궁근종, 유방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시판 중인 제품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제품은 여성호르몬제가 아니고, 칼슘, 철분 등이 함유된 건강기능 식품이라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조정대상보도 내용과 신청인 제품이 무관함을 인정하고, 인터넷 다시 보기(VOD) 하단에 알람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MBC -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 『[알고계십니까] 갱년기 와서 여성호르몬제 먹었는데 자궁적출을 해?』 제하의 보도 (2015년 11월 16일자)
- 내 용
 - ▷ 기 자 : 그런데 폐경기 후 찾아온 갱년기 증상 때문에 먹었던 여성호르몬제가 자궁근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 김○○ : 에스트로겐이 주입이 되면 없던 근종도 생길 수 있고요 있던 근종은 더 커지고, 유방암을 또 일으킬 수도 있고요.
 - ▷ 기 자 : 여성호르몬이 자궁근종과 유방암 등 여성질환에 관계가 깊다고 말하는 전문의.

그렇다면 주부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MBC-TV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가. 제목 : 건강기능식품을 여성호르몬제라고 잘못 보도한 사실을 바로잡습니다.
-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11월 16일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에서 “갱년기 와서 여성호르몬제 먹었는데 자궁적출을 해”라는 제목으로 여성호르몬제 섭취로 갱년기 여성들에게 자궁근종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본 방송은 “갱년기인가 싶어 여성호르몬제를 섭취하여도 증상이 더 심해졌다”는 리포터의 멘트와 동시에 여성이 ○○○○○○의 □□□□ 제품을 섭취하는 화면을 방송하였는데, 사실확인 결과 ○○○○○○의 □□□□ 제품은 여성호르몬제가 아니라 칼슘, 철분, 미네랄 등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이에 오보를 바로잡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알립니다]

이 방송 중 “알고 계십니까” 코너 시작 후 27초에 보여진 제품은 여성호르몬제가 아니라 갈슘, 철분, 미네랄 등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임을 밝혀 드립니다.

2. 피신청인은 위 1항의 보도문을 인터넷 MBC에 게재된 본 사건 조정대상방송 다시보기 화면 (<http://www.imbc.com/broad/tv/culture/choi4men/vod/index.html>) 최하단에 2016년 1월 25일까지 게재하되, 글자체 및 글자크기는 해당 화면의 “[알고계십니까] 갱년기 와서 여성호르몬제 먹었는데 자궁적출을 해?”와 동일하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2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한 정정보도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그 소속 임직원(외주 제작사 포함)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6. 1. 20.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iMBC -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2015년 11월 16일자, 2376회) 다시보기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사례5

시화호 아내 토막 살인사건의 범인이 19년 전 중국에서도 동일한 수법의 살인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6서울조정175·176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김○○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MBC-TV)
중 재 부	서울 제8중재부
접 수 일	2016. 2. 12.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정정보도)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시화호 아내 토막 살인사건의 범인이 19년 전 중국에서도 동일한 수법의 살인을 저질렀고, 투먼시 공안국이 해당 사건의 용의자로 위 범인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중국에서의 살인사건은 동명이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신청인과는 무관하다며 정정보도 및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해당 경찰서에 사실조회를 통해 중국 투먼시 토막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중국 공안 수사팀이 한국에 파견되거나 협조한 사실 및 신청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사실 등에 대해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신청인이 중국 공안으로부터 투먼시 토막 살인사건의 용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바가 없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시화호 아내 토막 살인범, 中서도 19년 전 토막 살인』 제하의 보도 (2015년 11월 21일자)
- 내 용
 - ▷ 앵 커 : 올 봄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시화호 토막 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범인이 똑같은 수법으로 이미 중국에서도 토막 살인을 저질렀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 ▷ 기 자 : 지난 1996년 10월, 북중 접경지역인 투먼시의 한 다리 아래에서 20살 안팎으로

보이는 여성의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공안은 같은 마을에 사는 중국동포 김○○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이미 잠적한 뒤였습니다.

19년이 흐른 지난 7월 투먼시 공안국은 한국의 방송보도를 보고 시화호 토막 살인사건의 수법이 투먼시 사건과 비슷하고 피의자 이름이 같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 ▷ 이△△ 시흥경찰서 수사본부장/지난 4월 : “처가 중국 내 주거지 매입을 위해 돈을 보내라고 재촉하자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쓰러뜨리고 ... ”
- ▷ 기 자 : 현지 공안은 곧바로 한국으로 수사팀을 보내 김○○이 투먼시 토막 살인사건의 용의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은 지난 4월 시흥시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년 전 오원춘, 작년 11월 박춘풍 사건에 이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중국동포의 흉악 범죄였습니다.
- ▷ 김○○ : “후회합니다. 집사람한테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 ▷ 기 자 : 중국 공안 당국은 김씨의 중국내 살인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돼있는 만큼 “양국간 공조를 통해 사법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 정정보도문을 MBC-TV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가. 제목 : ‘시화호 아내 토막 살인범, 中서도 19년 전 토막 살인’ 관련 정정보도문
-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2015. 11. 2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시화호 아내 토막 살인범, 中서도 19년 전 토막 살인”이라는 제목으로 김○○씨가 19년 전에도 중국에서 같은 수법으로 토막 살인을 저질렀고, 중국 공안으로부터 중국 투먼시 살인사건의 용의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김○○씨는 당시 현대상선에 재직하며 승선한 상태였고, 중국 공안으로부터 용의자라는 사실을 확인받은 사실이 없으며, 중국 투먼시 살인사건은 동명

이인에 의해 범해진 사건으로, 김○○씨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시화호 토막 살인범 중국서도 토막 살인” 관련 보도문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2015년 11월 21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시화호 토막 살인범 김○○ 씨가 19년 전 중국 투먼시에서도 토막 살인을 저질렀고 중국 공안으로부터 투먼시 토막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확인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국내에서 현재까지 중국 공안으로부터 투먼시 토막 살인사건의 용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바가 없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6. 4. 8.(금)까지 제1항의 보도문을 <MBC-TV> 평일 오후 5시에 시작하는 <이브닝뉴스> 프로그램의 말미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통상의 정정보도문 아래자막 크기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3.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6. 4. 1.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MBC-TV - 이브닝뉴스 프로그램 『“시화호 토막 살인범 중국서도 토막 살인” 관련 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6년 4월 6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사례6

익산시가 등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뉴스통신사에 광고비를 집행한 것이 언론 관련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6전북조정8·9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익산시
피 신 청 인	익산인터넷뉴스
중 재 부	전북중재부
접 수 일	2016. 3. 28.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정정보도, 손해배상)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익산시가 언론 관련 조례의 입법 취지와 달리 예산을 부당하게 운용 및 집행하여 오히려 익산지역 신문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익산시는 조례에서 정한 ‘운용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5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언론사는 신문과 방송에 한하며, 뉴스통신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뉴스통신사에 대한 광고비 집행에 문제가 없다며 정정보도 및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해당 조례를 확인하고, 익산시에서 뉴스통신사에 대해 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은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 1,000,000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1

- 익산인터넷뉴스 - 『[탐사] 익산시, 익산시의회 ‘익산 지역신문 죽이기’ 편승(1)』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1일자 핫이슈면)

■ 내 용

익산시의회가 지난 1월 11일 ‘조례 제1539호’로 “익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언론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이 조례제정으로 인해 익산시에 출입하는 대형 언론사만 살아남고 지역을 대표하는 소수 언론사는 죽어가고 있어 법 취지에 맞게 운용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익산시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예산집행 투명성을 언론사와 시민들에게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공개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면서 의회에서 제정한 언론조례가 법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철저한 검토와 함께 소수언론과 익산 지역신문이 조례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형평성에 ‘방점(傍點)’을 두어야 한다.

특히 익산시의회에서 제정한 언론 관련 조례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특정 언론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애매모호(曖昧模糊)’하게 제정된 조례로 인해 시에서 조례운용에 있어 허점투성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언론사들이 속출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이에 본지(익산인터넷뉴스)는 익산시의회에서 제정한 언론 관련 조례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과 운용에 있어 형평성, 차별성 등을 하나씩 짚어가며 ‘기획, 탐사’로 보도하여 익산시의회에서 제정한 언론 관련 조례에 익산시가 편승하여 대형 언론 위주의 정책을 펼칠 것에 대비해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지역사회 구석구석 벌어지는 일들을 세심하게 보도하는 소수 지역신문 말살정책에 사명을 다하고자 보도의 목적을 두었다.

조정대상보도 2

- 익산인터넷뉴스 - 『[탐사2] 익산시, 익산시의회 언론조례 무시하고 부당혈세(광고비) 집행』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2일자 핫이슈면)

■ 내 용

익산시가 시를 출입하는 뉴스통신사에게 혈세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익산시는 통신매체인 ‘뉴스1’에게 언론조례가 제정, 공표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혈세를 지원해 왔다. ‘뉴스1’ 매체는 2011년 5월 26일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처음 등록하여 채 5년이 안되게 사업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는 언론조례가 제정, 공표된 이후로도 부당하게 이 업체에게 광고비를 지속적으로 집행하여 오면서 같은 조건에 있는 일부 지역신문에게는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차별성뿐만 아니라 법(조례) 위반으로 언론사와 시, 의회 간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2016년 1월 11일 제정된 ‘익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에 따르면 “언론이란 해당법률에 의해 설립된 방송, 신문, 인터넷 신문, 통신사, 기타 특수 전문지(주간,

월간, 잡지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아울러 제3조(운용대상) 2항 1호 '운용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5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4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통신사)'이 이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조(홍보비 운용기준) 2항 '방송, 신문, 인터넷 신문, 통신사, 기타 특수 전문지(주간, 월간, 잡지 등)는 매체의 객관적인 영향력 및 홍보효과를 고려하여 홍보비를 운용해야 한다'라는 익산시에서 홍보비를 운용하는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를 출입하는 '뉴스1(통신사)' 매체는 2011년 5월 26일 서울시로부터 '통신판매업'으로 등록 신고를 필하고 있어 익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운용대상) 2항 1호 '운용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5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어 익산시는 5년이 안 된 지역신문 탄압을 타겟으로 삼으면서 중앙에 있는 대형 언론사에게는 위법을 감수하여 가면서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았나"하는 의문을 떨치게 하고 있다. 익산시청에는 중앙에서 활동하는 노컷뉴스(인터넷신문), 연합뉴스(통신사), 뉴시스(통신사), 뉴스1(통신사) 등 인터넷신문 매체와 뉴스통신 매체 기자들이 출입하면서 지역신문 기자들과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대형 언론을 앞세워가며 소위 갑질의 행태를 형성하여 지역신문들의 공간(기자실)을 차지하고 엄청난 시 혈세(광고비)를 지원받으며 공간을 비우는 등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익산시의회에서 제정, 공표한 언론조례는 중앙에서 활동하는 매체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없는 '무용지물(無用之物)'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일부 사람들은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까지 알권리를 위해 시민들에게 보도하는 소수 "지역신문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조례"라는 말들이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조례에 따라 시 혈세를 집행해야 할 익산시가 특정 언론사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광고비를 지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며 관련 부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신문은 대책 마련에 힘을 합쳐야 한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익산인터넷뉴스 홈페이지 최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72시간 이상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2건의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각각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72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목 : 익산시 언론 관련 예산운영에 관한 조례' 보도 관련 정정 및 사과

나.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3월 21일 및 22일자 탐사면에 “익산시, 익산시의회 언론조례 무시하고 부당혈세(광고비) 집행”이라는 제목으로 익산시에서 관련 조례에서 등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A뉴스통신사에게 부당하게 혈세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신문 보도는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익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용 조례에 따르면 ‘운용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5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지원받는 언론사는 신문과 방송에 한하며 뉴스통신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익산시에서 A뉴스통신사에 대해 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은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신문에서 조례 내용과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에서 부당하게 특정 언론사에게 혈세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해서 익산시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익산시 언론 조례 집행〉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21일 및 22일자 탐사면에 “익산시, 익산시의회 언론조례 무시하고 부당혈세(광고비) 집행”이라는 제목으로 익산시에서 관련 조례에서 등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A뉴스통신사에게 부당하게 혈세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신문 보도는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익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용 조례에 따르면 ‘운용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5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지원받는 언론사는 신문과 방송에 한하며 뉴스통신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익산시에서 A뉴스통신사에 대해 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은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신문에서 조례 내용과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에서 특정 언론사에게 부당하게 협세를 지원하고 있다고 연속 보도해서 익산시에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6년 4월 12일(화) 정오까지 제1항의 보도문을 익산인터넷뉴스 홈페이지 초기화면 최상단 위치에 게재하되, 게재형식은 다른 상단 기사와 동일하게 하고 보도문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보이도록 한다. 게재 후 96시간 이상 초기화면 최상단에서 아래로 3번째 이상 위치를 유지한 후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본 합의서에서 정한 제목, 본문, 게재방법 등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피신청인은 2016년 4월 11일(월) 정오까지 조정대상기사 2개를 포함한 총 3개의 보도문 (「[탐사1] 익산시, 익산시의회 ‘익산 지역신문 죽이기’ 편승(1)」, 「[탐사2] 익산시, 익산시의회 언론조례 무시하고 부당협세(광고비) 집행」, 「[탐사3] 익산시 홍보담당관실, ‘전라북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익산인터넷뉴스 ‘제소(提訴)’」)을 익산인터넷뉴스 홈페이지 및 기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한다. 또한 위 보도문이 포털 블로그, 카페, 웹게시판 등 각종 인터넷 게시공간에 복사 및 전제된 경우 피신청인 언론사 명의로 포털 사이트 등 해당 게시판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도록 하며, 신청인이 포털 검색 등을 통해 발견한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게 피신청인이 해당 전제글에 대한 삭제권한을 신청인에게 위임한다. 단, 인터넷 게시공간에 대한 삭제의무는 2016년 7월 31일까지에 한한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6년 5월 31일까지 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2016년 6월 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상기 합의를 모두 이행하는 조건으로 본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기사작성기자 등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해 일체의 다른 법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2016. 4. 8.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익산인터넷뉴스 - 『익산시 언론 조례 집행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2일자 초기화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